

# 강서구 노인성질병자 지원조례 발의 부서의견

2020. 9. 8.(화) 어르신복지과

## □ 제안이유

- 강서구 거주 65세 이상 노인중 외상상태이거나 각종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 조호물품을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임 (※. 조호물품 : 환자를 돌보는데 쓰는 물품)

## □ 지원대상 (조례 제3조)

-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하는 65세이상 어르신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
- 노인장기요양등급 1등급과 2등급
- 의사소견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조호물품 필요내용 기재

## □ 지원물품 (조례 제2조, 제3조)

- 질병 노인을 돌보는 물품으로서 노인의 신체활동 지원에 쓰이는 물품 (예 : 기저귀, 방수포, 물티슈, 방수시트 등)
- 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는 제외

## □ 예상 소요예산

- 대상자 기저귀 지원시 :

800원\* 주40매(1일5.7매)\* 235명\* 52주(1년) = 391백만원

(택배비 포함. 유한킴벌리 제품)

## □ 실태 및 지원현황

- 전국 타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사업으로 조호물품 지원 사례 없음. 다만, 2019년 경남 거창군 보건소에서 노인성질환(치매외 뇌출혈, 뇌졸중)에 대하여 군비로 30명 11,700천원을 지원

- 우리구도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조호물품을 국비로 지원중이며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 명단과 대조 결과 33%의 어르신에게 조호물품이 지원되고 있음

**※ 2019년 국비 치매 안심센터 조호물품 지원사업**

- 지원대상 : 치매소견자로 중위소득 120%이하
- 지원기준 : 월15,000원(30매) 지원 (연18만원 상당)
- 지원규모 : 월 323명 연 29,000천원 (국50%, 시25%, 구25%)

**□ 부서의견**

- 반 대
- 필요량 지원시 소요예산이 391백만원 예상되며 매년 대상인원이 증가하여 재정여건상 예산확보 어려움
- 조례(안)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(요양등급 1~2등급)가 조호물품 필요시에는 국·시비로 지원되는 치매안심센터 조호물품 지원 가능
- 치매안심센터 조호물품 지원사업(국·시·구비)과 중복 가능성이 있고 조례제정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효율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

**※ 참고사항**

- 2020. 2월 본 조례안이 상임위 부결된 바 있으며
- 본 사회보장제도 신설시 보건복지부 심의 통과가 필요(사회보장법 제26조2항)